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기업부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5개 중소기업부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2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인가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 2022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 2016년 1월 1일

제3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법인출자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위탁기업의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 2022년 1월 1일

제5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장관은 제32조의5에 따 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인가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 기업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성 능인증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2 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 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 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 2022년 1 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 2016년 1월 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 른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법인출자 한도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1. 제5조의2에 따른 위탁기업의 <u>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 2022년 1월 1일</u>
1. (생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u> <u>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u> <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u> <u>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u> <u>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u> <u>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u> <u>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u> <u>야 한다.</u> <u>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u> <u>자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u> <u>5년 1월 1일</u> <u>2. 제5조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u> <u>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u> <u>1일</u>	<u><삭 제></u>